

## 첨부(1) 정기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점검항목과 범위

### 1. 건설기술진흥법 현황

가.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및 점검은 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(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- 532호) 제 21조” 따라 수행함.

나.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해당 안전관리 업무 수행범위에 대해, 동 법 시행령(2016. 5.19)에 의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기안전점검항목을 수행중

- 1)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
- 2)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
- 3)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\*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
\* 주변: 20미터 이내 시설물 또는 100 미터이내 가축사육
- 4)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
- 5)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
- 6) 주택법에 따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
- 7)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건설기계\* 사용된 건설공사  
\* 건설기계 : 천공기(높이 10미터이상), 항타 항발기, 타워크레인
- 8) 「건설법 시행령」 제 101조 2 ‘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’ 대상은 다음과 같음
  - 가)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
  - 나)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
  - 다)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이상 흩막이 지보공
  - 라)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
  - 마)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, 허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가설구조물

### 2.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현황

가. 제 23조 4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함.

- 1)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
- 2) 공사 목적물의 품질,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
- 3)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
- 4)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

나. 제 27조 ‘안전점검에서의 현장조사 및 실내분석’에 현장조사 및 실내분석은 다음과 같음

- 1) 육안검사 : 구조물의 균열, 재료분리 여부, 콜드조인트 등의 발생여부를 육안으로 면밀히 확인하는 것
- 2) 기본조사 : 비파괴시험장비로 실시하는 콘크리트 강도시험 및 철근배근 탐사 등
- 3) 추가조사 : 구조안전성 평가 및 보수·보강 판단에 필요한 지질·지반조사, 강제조사, 지하공동탐사, 콘크리트 체체시추조사, 수중조사, 콘크리트 물성시험 등

다. [별표 3] 안전점검 현장조사의 조사목적 및 세부시험

육안검사, 기본조사, 추가조사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.

### 3. 문제점

가.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발주처에서 시행 공고되는 내용을 살펴보면, 건설공사 안전 점검항목중 [건설기계관리법], [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]에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공사에 대하여 천공기, 향타·향발기, 타워크레인 등의 본체에 대한 검사내용을 담고 있음.

나. 이는 건설공사 업무 수행지침에 의한 다음과 같은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임.

- |  |
|--|
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)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</li><li>2) 공사 목적물의 품질, 시공 상태 등의 적정성</li><li>3)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</li></ol> |
|--|

### 4. 개선사항

건축물의 [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]에 의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중 [건설기계관리법], [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]에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공사의 안전점검내용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

가. 천공기, 향타향발기,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목적물의 본체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해당설비 안전점검 전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검사원 유자격자가 점검을 수행중.

나. 따라서 건진법에 의한 안전점검 용역범위는 [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] 상가 2번, 가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함.

예)

- |  |
|--|
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)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유자격자에 의한 점검 이행여부 및 운행계획의 적정성</li><li>2) 작업절차가 적절하게 준수되는 지 여부 확인</li><li>3) 필요시, 기계 기초에 대한 구조적인 점검(철근, 콘크리트, 앵커볼트, 부등침하 등)</li><li>4)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</li><li>5) 설치, 해체시 작업방법 및 순서 등 작업계획서 준수 여부</li></ol> |
|--|

다. 발주자가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을 공고할 때, [건설공사 안전관리 수행지침]에 명시된 대로, 기계, 전기설비의 본체에 대한 점검이 아니라, 2)항과 같이 적정한 건축분야 정기 안전점검 범위 내에서 수행하도록 지방자치행정기관에서 명쾌한 지침을 수립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함.